

# 집유제도 개선에 바람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강성원

모든 농산물의 유통 중에서 우유 만큼 그 구조가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경우는 없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느 목장에서 언제 얼마만큼 생산되어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으며 현물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하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유의 유통구조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음은 우유라는 낙농산물의 특성에 연유되고 있다. 우유는 하루도 쉴새없이 젖소의 몸에서 분비되는 것이고 또 그 형태에 있어서 취급하기 불편한 액상이고 대량일뿐 아니라 잠시라도 그냥 두어서는 바로 부패되어 버리기 때문에 즉시 수집되어 가공처리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는 점은 「즉시 가공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적 농업경영에 있어서 그 산물은 대체로 대량성이자 상업성이어서 가공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유만큼 시한적(時限的) 절대성을 가지는 농산물은 없다. 이렇게 볼 때,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와 그 우유를 구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유업체는 원료유의 거래 당사자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성립된다.

따라서, 생산농가와 유업체의 거래관계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낙농산업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낙농산업

의 발전과정과 상황의 변천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1960년대 말 까지는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이란 생산자 자생단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고독한 명맥 유지 시대로 볼 수 있고, 1970년대는 고도경제성장과 더불어 폭발하는 우유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생산기반조성의 시대였으며 바야흐로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안정적 경제성장과 함께 낙농산업에 있어서도 안정적 발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과 더불어 생산농가와 유업체의 관계, 즉 거래당사자간의 입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1960년대는 초기성장단계로 접어들더라도 그 이후는 낙농산업의 커다란 전환기를 거치는 시련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에 있어서의 상황은 생산농가의 입장이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유업체로부터 낙농가는 자금지원, 원유의 검사완화, 타업체보다 유리한 현물공세 등으로 우대를 받게 되고 대부분의 낙농가는 이로 말미암아 낙농경영의 내실화를 계울리하였음도 사실이다.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생산농가의 원유생산과잉으로 인한 우유처리의 곤란으로인하여 유업체의 원유인수거부나 검사강화 등의 불가피한 조치들로 말미암아 낙농가들의 경영상태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기초적인 경제원리로 필연적인 것이며 거래당사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기는 하다.

그래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그 크고 작은 어느 쪽이든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내 버려두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송두리채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점에 당도할 때 그 문제의 내용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이의 해결방법은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원유수급체계는 이러하다.

1. 낙농가는 우유를 생산한다.
2. 우유처리업체는 낙농가로 부터 직접 원유를 수매하기도 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원유를 수매하는 업체로 부터 전매(專買)하기도 한다.
3.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낙농가는 지역 또는 업체에 묶여 타유업체에 납유하는 것을 금지 당하고 있다.
4. 우유의 단가 및 가격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검사와 계량은 원유를 수매하는 유업체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 수급 불균형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공급부족시

가. 유업체는 시장점유율을 유지 또는 늘리기 위하여 원유확보노력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나. 이때 낙농가는 특별한 자금지원, 검사완화, 원유대의 고시단가외의 추가요구등 여려가지 특혜를 요구하게 되고 유업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는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유치단체에 있는 낙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낙농가는 이런 유리한 때에 체질강화노력을 해야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반대의 경우보다 둔화된다.

라. 따라서 소비자를 위한 원유품질향상은 어렵게 된다.

## ◎ 공급과잉시

가. 유업체는 가능한 한 수유를 거부하려 하게 되며, 원유수집업체로 부터 전매(專買) 하던 원유를 최선의 경우에도 계약기간(대체로 일년 이하)이 끝나는 대로 재계약을 기피하고 인수하지 않게 된다. 이때 원유수집업체는 낙농협 동조합인 故로 그 조합의 조합원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나. 낙농가는 유업체가 검사를 엄격히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유대를 받지 못하도록 지방을 검사등과 계량을 부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다. 유업체는 제품체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생기고 따라서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으면 원유대지급의 어려움이 노정된다.

라. 낙농가는 제품의 일부를 떼맡게 되는 경우가 있어 목장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마. 유업체는 유제품의 유효시한성으로 말미암아 덤펑을 강요당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업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가 있다.

바. 공급과잉상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낙농가는 유업체에 의하여 식민화(殖民化)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결국 우유의 수급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문제의 핵심은

- ① 공급부족시에는 낙농가의 공급권의 횡포가
- ② 공급과잉시에는 수요독점권의 횡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유수급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충분히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 제도를 그대로 두면 낙농의 진실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낙농은 쇠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갑질한 마음으로 그 해결방안을 여기에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개선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의 능률적 이용, 농가소득증대와 집유경비의 극소화를 기한다.

둘째, 원유의 수요독점과 공급독점을 동시에 배제한다.

셋째, 공정한 원유검사체제 확립으로 생산농가와 유제품,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

넷째, 원유의 수급조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상과 같은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원유의 집유를 일원화(一元化) 한다.

만일 유업체별로 전국을 분할하여 집유를 실시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원유에 대한 수요독점폐단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수준향상과 생산농가의 권익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 생산자단체의 집유일원화에 대한 공급독점 우려는 원유의 분배권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집유지휘권의 공영화로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앤다.

집유일원화에 따라 전국집유노선의 일괄 재조정으로 물적유통(物的流通)의 신속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유경비를 줄이고 국토이용을 효율화하며 수급의 효과적인 조절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수급조절 문제는 필요시 계획생산제도의 자연스러운 적용을 무리없이 기할 수 있으며 극도의 혼란과 위험성이 따르는 가격에 의한 수급조절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집유방식 및 원유검사계량업무를 표준화 함과 아울러 검사와 계량업무를 공영화(公營化) 한다.

현재의 집유방식은 아직까지 약 80%에 달하는 집유차량이 전근대적인 일반화물차에 의하여 보냉(保冷) 되지 않은 채 집유됨으로서 생산농가가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고 냉각을 잘 시켰다 하더라도 집유과정에서 오염되고 세균증식이 계속되어 유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집유된 우유가 산폐물합격이되어 그 원

인이 집유과정에 있었더라도 폐기된 원유의 손실은 생산농가에 전가되는 모순은 간파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우유의 거래당사자가 우유의 합격여부라든가 가격을 결정하는 유질을 판정하는 행위를 어느 일방에서 결정하는 모순도 배제되어야 한다.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상황이 공급과잉상태에 돌입되고 있는 현재 지금과 같은 검사제도하에서는 결코 정당한 거래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 검사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 3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집유일원화시 유업체(협동조합포함)는 집유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하는 양의 원유를 공급받도록 계약하게 되며 원유의 잉여분이 발생시에는 집유기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부족시에는 수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서 우유처리업체의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토록 한다.

또한 낙농가는 납유하는 유업체의 의사에 따라서 지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며 또 받더라도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을 보장이 없는 불합리화를 일소하고 낙농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공평하고 상당한 지도사업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원유의 가격결정문제 - 생산원가나 집유비용을 포함하는 기본가격과 유질에 의한 등급제 및 계절차등제 - 와 원유의 분배, 기존의 집유체계에서 빚어진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채권·채무관계, 집유기구의 편성정비, 집유시설의 양도 등의 연계되는 문제들이 많지만 낙농산업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련당사자 - 생산자 단체, 유가공업체, 정부당국등 -의 발전적이며 사심(私心) 없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이므로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 바이다.

집유일원화 방안에 첨언하여, 흔히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으로는 70년대에 유업체들이 정부

시책에 호옹하여 집유기반을 구축하고 투자한 점을 들어 현제도를 유업체의 권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이도 있으나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집유를 하나의 이권(利權)으로 보려는 그 자체가 근원적 모순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모순이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깊숙히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원유의 분배권이 유제품 시장경쟁에 작용한다면 그것은 안일한 기업경영에 편승하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분배권은 우유의 특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정하고 명확한 조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집유일원화라는 당면과제에 관하여 아직도 낙농가나 유업체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간결한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집유일원화가 가져오는 利点은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확신한다.

먼저 낙농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1. 낙농가는 집유거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유제품을 유대 대신으로 지급받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3. 유대가 정당한가 아닌가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4. 전국낙농가 모두는 공평한 지도사업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다음 유가공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1. 유가공업체는 원유잉여시에도 집유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된다.
2. 가공제품(분유) 체화로 인한 자금부담이 해소된다.
3. 체화제품의 유효기간 제한이라는 애로사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 모든 유가공업체는 필요한 양의 원유만을 공급받게 되므로 원하는 만큼 생산판매하게 되어 기업경영의 적극적 개선과 판매확대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집유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와 계량에 관련된 농가와 유업체간의 알력관계는 일시에 해소되며, 원유가 잉여이든 부족이든 집유기구가 모든 책임을 전담하게 되므로 불황과 비수기 또는 호황과 성수기등 어떤 경우에라도 낙농가와 유업체는 모두 안심하고 생산성향상에만 주력할 수 있게 된다.

주지의 사실이나 우리 낙농산업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여러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낙농산업을 튼튼하게 다져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관계 제위 모두가 합심하여 집유제도 개선에 협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원고를 기다립니다.

월간 낙농육우회보는 전국의 회원농가 여러분을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지에 여러분을 필자로 모시고자 하오니 주인의식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경영체험기, 행사안내, 시정요구나 건의, 문예등 글의 종류나 길이에 구애됨 없이 적어 보내시면 되고,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